특 수 검 사 업 무 세 칙

목 차

	제1조 목적	1
	제2조 적용범위	1
	제3조 정의	1
	제4조 검사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2
	제5조 검사 시행기준	3
	제6조 검사신청서 접수	3
	제7조 검사결과의 기록 및 발급 등	4
	제7조의2 열람 및 대여 삭제 <2018.9.10.>	5
	제8조 검사수수료	5
	제9조 검사반 운용	5
	제10조 검사실적 보고	6
	제11조 전산처리업무	6
	제12조 검사기기의 관리	6
	제13조 검사용 장비의 교체	7
	제14조 검사원의 의무	7
	제15조 검사원의 자격 등	7
	제16조 검사원의 교육	7
	제17조 검사 관할지역	8
	제18조 세부시행지침 등	8
냑	쿠 칙	8

특수검사업무세칙

2004.10.27 제정(규정제680호) 2006. 5.26 개정(규정제760호) 2007. 1. 4 개정(규정제787호) 2008. 2.13 개정(규정제819호) 2008.11.10 개정, 직제시행세칙 개정(규정제841호) 2009. 2.10 개정(규정제851호) 2012. 4.23 개정(규정제959호) 2013.7.30 개정(규정제1002호) 2015.5.19. 개정(규정제1064호) 2017.2.1. 개정(규정제1128호)

2018.4.6. 개정(규정제1176호) 2018.9.10. 개정(규정제1191호) 2019.2.19. 개정(규정제1214호) 2019.7.19. 개정(규정제1237호) 2020.1.3. 개정(규정제1264호) 2020.6.8. 개정(규정제1287호) 2020.12.17. 개정(규정제1303호) 2021.6.23. 개정(규정제1334호) 2024.06.25. 개정(규정제1474호)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특수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7>
- 제2조(적용범위) ① 기기정도검사에 관한 업무는 「자동차관리법」(이하, "관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자동차의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법률"이라 한다)에 의한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 및 같은 법 하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2.13., 2020.12.17>
 - ② 삭제 <2020.6.8>
 - ③ 궤도검사에 관한 업무는 「궤도운송법」, 「궤도운송법 시행령」, 「궤도운송법 시행 규칙」, 「궤도시설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고시"라 한다), 「궤도시설 안전 검사기준」, 「궤도시설 점검·정비요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1.4, 2012.4.23., 2020.12.17>
- **제3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4, 2012.4.23., 2015.5.19., 2018.9.10.>
 - 1. "특수검사"라 함은 기기정도검사 및 궤도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0.6.8>
 - 2. "기기정도검사"라 함은 「관리법」에서 정한 정밀도검사와 「환경법률」에서 정한 환 경측정기기의 성능시험검사 및 정도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0.12.17>
 - 3. 삭제 <2020.6.8>
 - 4. "궤도검사"라 함은 「궤도운송법」에서 정한 궤도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0.12.17>
 - 5. "재검사"("재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보완완료 후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 6. "특수시설"이라 함은 「궤도운송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궤도시설 및 군사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17>
- 7. "특수검사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 이라 함은 기기정도검사, 게도검사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말한다.
- 8. 삭제 <2020.6.8>
- 9. "전자서명"이라 함은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기기정도검사 신청 등을 처리함을 말한다.
- 제4조(검사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① 기기정도검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일정계획을 수립·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3, 2013.7.30., 2015.5.19., 2018.9.10.>
 - 1. 지역본부의 장은 관할지역의 자동차검사소 및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설치된 정치식기기에 대한 매 분기 검사일정계획을 수립하여 매 분기 개시 30일 전까지 특수검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주무부서의 장은 제1호에 의하여 통보된 검사일정계획을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연합회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 3. 제1호의 검사일정계획에 정치식기기의 최초설치·구조변경·설치위치변경·재검사 등으로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검사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 4. 기기정도검사 일정이 제1호의 계획과 다르거나 기타 사유로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검사일정변경대장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 ② 궤도검사는 검사신청일을 기준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계획을 수립·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4., 2012.4.23., 2019.7.19.>
 - 1. 안전검사일정계획: 해당연도 1월 31일까지 안전검사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2024.06.25.>
 - 2. 안전검사계획: 검사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 3. 최초검사계획: 관할관청의 요청에 의하며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 4. 설계서안전도검사계획: 검사를 의뢰받은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 5. 특수시설검사계획: 검사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 6. 시험운행 적정성 검토계획: 관할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시행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조(검사 시행기준) ① 기기정도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7.30>
 - 1. 기기정도검사는 제4조제1항제2호의 통보된 일정에 검사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와 관련된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 2. 기기정도검사를 시행 시 검사대상기기가 교정기능을 제공하는 경우는 검사 중에 교정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검사결과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 ② 삭제 <2020.6.8.>
 - ③ 궤도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4., 2012.4.23., 2019.7.19., 2020.12.17>
 - 1. 안전검사는 신청업체의 검사 희망일자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06.25.>
 - 2. 안전검사를 제외한 검사, 시험운행적정성검토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업체 안전검사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15일까지 연장할 수있다. <개정 2020.12.17., 2024.06.25.>
 - ④ 궤도검사 업무의 재검사는 기술적으로 개·보수 내용에 대한 사진, 계산서, 기타 증빙 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2020.6.8>
 - ⑤ 기기정도검사 업무의 재검사는 개·보수 내용에 대한 사진, 동영상, 기타 증빙서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측정값의 입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3.>
- 제6조(검사신청서 접수) ① 지역본부의 장은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 기기정도검사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0. 2020.6.8>
 - ② 삭제 <2015.5.19>
 - ③ 검사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하여 보완 후에 재검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9., 2020.12.17., 2024.06.25.>
 - ④ 삭제 <2020.9.10.>
 - ⑤ 기기정도검사 신청서는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서명 및 인감날인 처리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암호화 처리하여 저장한다. 다만,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신청된 경우는 정보관리시스템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신설, 2015.5.19.>
 - ⑥ 「관리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환경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 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자동차검사소는 기기정도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42호서식 기계·기구 정밀도검사신청서(최초, 정기, 구조 변경) 및 「환경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6호서식 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를 관할 지

역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기기정도검사를 신청 할 경우 기기정도검사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6.8., 2020.12.17>

- 제7조(검사결과의 기록 및 발급 등) ① 기기정도검사는 「관리법」 및 「환경법률」에서 정하는 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발급 및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4, 2008.2.13., 2013.7.30>
 - 1. 검사를 시행한 때에는 안전도측정기기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계·기구 정밀도검사표 (최초, 정기, 구조변경)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택시미터주행검사기 및 가스누출감지기 정밀도 검사표까지 기계·기구별로 기록하고, 환경측정기기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정도검사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합격한 기기에 대하여는 「환경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9호서식 정도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 2. 최초정밀도검사를 시행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기구 정밀도검사 기록부에, 환경측정기기의 최초정도검사를 시행한 때에는 「환경법률」에서 정한 정도검사기록부 2 부 작성하여 1부는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지역본부에 비치하여 매 검사 시 마다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측정기기 검사결과 합격된 기기에 대하여는 「관리법 시행 규칙」의 별표 13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합격표를 교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최초 정밀도검사합격표발급대장에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 4. 제7조제1항제1호의 별지 제8호서식의 기계·기구(최초, 정기, 구변)정밀도검사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택시미터주행검사기 및 가스누출감지기 정밀도 검사표까지 및 「환경법률 시행규칙」의 별지 제77호서식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는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30. 개정 2015.5.19.. 2020.12.17>
 - ② 삭제 <2020.6.8.>
 - ③ 궤도검사를 시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관할관청 또는 해당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4., 2008.2.13., 2012.4.23., 2019.7.19.> 1.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는 삭도시설안전검사결과보고서 또는 궤도시설안전검사결과보고서 또는 궤도시설안전검사결과보고서를 공단보관용, 검사신청자 및 관할관청 통보용 각 1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 2024.06.25.>
 - 2. 최초검사는 삭도시설안전검사결과보고서 또는 궤도시설안전검사결과보고서 및 별표 2의 최초검사결과표에, 설계서안전도검사는 별표 3의 설계서안전도검사결과표에 공단보관용, 검사신청자 통보용 각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화물수송용으로 설치한 가설용 궤도시설은 최초검사 결과표를 제외한다. <개정 2020.12.17>
 - 3. 특수시설검사는 공단보관용, 검사신청자 통보용 각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4. 시험운행적정성검토는 별표 제3의3의 시험운행적정성검토결과표에 공단보관용, 관할관 첫 통보용 각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3>
- ④ 삭제 <2020.6.8>
- ⑤ 제3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검사증에 대하여 분실 등의 사유로 민원인으로부터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주무부서의 장 또는 지역본부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증 발급대장에 등재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0., 개정 2020.12.17., 2024.06.25.>

제7조의2(열람 및 대여) 삭제 <2018.9.10.>

[본조신설 2008.2.13.]

- **제8조(검사수수료)** ① 기기정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2.10., 2012.4.23., 2013.7.30., 2017.02.01.>
 - 1. 정밀도검사의 각 기계·기구별 최초, 구조변경 및 정기정밀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4의 검사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별표 5의 검사소요시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7>
 -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계·기구의 최초 및 구조변경 정밀도검사, 「환경법률」에서 정한 차대동력계의 최초검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17>
 - 3. 공단은 환경측정기기 성능시험검사 출장 시에 소요되는 출장여비를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여비 지급기준은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17>
 - ② 궤도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7.1.4., 2019.2.19., 2019.7.29.>
 - 1. 안전검사, 설계서안전도검사, 시험운행적정성검토, 특수시설검사수수료는 별표 4의 검사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별표 5의 검사소요시간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17>
 - 2. 최초검사는 제1호에 따른 안전검사수수료에 다음 각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용한다. 다만, 화물수송용으로 설치한 가설용 궤도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4.23., 개정 2019.2.19.>
 - 가. 삭도시설: 안전검사 수수료의 100분의 50
 - 나. 궤도시설: 안전검사 수수료의 100분의 20
 - 3. 재검사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검사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 4. 수시검사는 제1호 안전검사 중 정기검사수수료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며, 검사대상이 추가 될 경우 100분의 40을 추가로 적용한다. <신설 2024.06.25.>
 - ③ 삭제 <2020.6.8>

제9조(검사반 운용) ① 기기정도검사 출장은 2인 1조로 구성하여 시행하며, 검사책임자는

- 기기정도검사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15.5.19>
- ② 삭제 <2020.6.8.>
- ③ 궤도검사는 검사책임자 및 검사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시행하며, 검사소요시간에 따라 검사원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4, 2012.4.2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원 1인 이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1.4., 2019.7.19., 2020.12.17>
- 1. 재검사
- 2.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 3. 삭제 <2020.6.8>
- 4. 삭제 <2020.6.8>
- 5. 군부대 등 특수시설검사
- 6. 주원동기 구동방식이 내연기관인 화물용 전용궤도 검사 <개정 2012.4.23>
- 7. 삭제 <2012.4.23.>
- 8. 시험운행적정성검토
- 9. 수시검사 <신설 2024.06.25.>
- 제10조(검사실적 보고) 기기정도검사의 안전도측정기기 검사실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8., 2020.12.17., 2024.06.25.>
- 제11조(전산처리업무)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개정 2008.2.13., 2012.4.23., 2013.7.30., 2015.5.19., 2018.9.10. 2020.6.8., 2020.12.17>
 - 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검사일정계획보고, 검사일정변경, 제4조제2항 검사계획 수립·통보 <개정 2024.06.25.>
 - 2. 제6조제1항의 검사신청서 접수
 - 3. 제7조의 기계·기구정밀도검사표, 기계·기구의 구조장치검사표, 택시미터주행검사기 및 가스누출감지기 정밀도검사표, 기계·기구정밀도검사합격표, 기계·기구정밀도검사기록부, 정도검사점검표, 정도검사증명서, 궤도시설 또는 삭도시설 안전검사 결과보고서 및 안전검사증 교부내역의 기록 및 발급 <개정 2020.6.8>
 - 4. 삭제 <2024.06.25.>
 - 5. 제12조의 검사기기의 관리
 - 6. 삭제 <2013.7.30>
- 제12조(검사기기의 관리) ① 주무부서의 장 또는 지역본부의 장은 검사기기에 대한 교정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국가표준기본법」제14조에 따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국가기술표준원 고시)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대상기기 및 교정주기는 별표 6의 교정검사 대상기기 및 주기와 같다. <개정 2009.2.10., 2013.7.30., 2018.9.10.,

2020.1.3., 2020.12.17., 2024.06.25.>

- ② 검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역본부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 21호서식의 검사기기 이력대장에 주요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0., 2020.12.17>
- ③ 기기정도검사 안전도 측정기기 검사기기 확보기준은 별표 7의 안전도측정기기 검사장비 확보기준과 같다. <개정 2020.12.17>
- ④ 지역본부의 장은 검사기기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때에는 이를 수리 또는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0.>
- ⑤ 제1항에 의하여 교정검사를 받은 때에는 교정(시험)검사 결과를 차기교정일 까지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0., 2020.12.17>
- 제13조(검사용 장비의 교체) 검사기기의 교체는 예산회계규정에서 정하는 내용연수 또는 기기의 성능을 감안하여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장비의 내용연수 이전에도 이를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 1. 고장발생이 빈번하여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 2. 고장이 발생한 때 수리비용이 취득금액의 5할을 초과할 경우
- 제14조(검사원의 의무) ① 주무부서의 장은 기기정도검사 또는 궤도검사 검사원에 대해 검사 업무에 필요한 안전수칙 등을 마련하여 검사원의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 ② 검사원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스스로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하며, 1인 검사업무 이외의 단독검사는 금지하고 반드시 2인 1조 또는 다인으로 검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06.25.>
 - ③ 신규 검사원은 1개월 이상의 교육 기간을 이수한 후에 본 검사에 투입하도록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원 안전수칙은 별표8의 검사원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6.23.]
- 제15조(검사원의 자격 등) ① 기기정도검사원의 자격은 「환경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환경·정밀계측 관련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12.4.23., 2020.12.17., 2024.06.25.>
 - ② 주무부서 및 지역본부의 장은 검사 업무량의 증가 및 검사원 중 결원 발생을 대비하여 직원 중에서 자격이 있는 자를 관련 부서 등과 협의하고 공모·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7., 2024.06.25.>
 - ③ 검사물량의 급증 및 집중으로 검사능력을 초과할 때에는 검사업무의 지원을 주무부서의 장 또는 지역본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5.26., 개정 2024.06.25.>
 - ④ 삭 제 <신설 2006.5.26, 개정 2009.2.10., 2020.12.17., 2024.06.25.>
 - ⑤ 삭 제 <2020.6.8>
 - 제16조(검사원의 교육) ① 주무부서의 장은 검사원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25.>

- 1. 신규교육 : 신규임용, 보직전환 등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 <개정 2024.06.25.>
- 2. 정기교육 : 신규교육 후 1년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개정 2024.06.25.>
- ② 제 1 항에 따른 검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별표 9 와 같다. <개정 2024.06.25.>
- 제17조(검사 관할지역) 주무부서의 장은 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본부별로 관할지역을 조정하여 검사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세부시행지침 등) 이 세칙 이외에 검사업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 지시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680호, 2004.10.27.>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세칙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세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760호, 2006.05.26.>

이 세칙은 200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87호, 2007.01.04.>

이 세칙은 2007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19호, 2008.02.13.>

이 세칙은 200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직제시행세칙) <규정 제841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제규정 및 지침의 개정) ①~⑩

① 특수검사업무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팀장"을 "처장"으로 한다. ② ~ 35 생략

부 칙 <규정 제851호, 2009.02.10.>

이 세칙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59호, 2012.04.23.>

이 세칙은 2012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02호, 2013.07.30.>

이 세칙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064호, 2015.05.19.>

이 세칙은 2015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28호, 2017.02.01.>

이 세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76호, 2018.04.06.>

이 세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91호, 2018.09.10.>

이 세칙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14호, 2019.02.19.>

이 세칙은 2019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37호, 2019.07.19.>

이 세칙은 2019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64호, 2020.01.03.>

이 세칙은 2020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87호, 2020.06.08.>

이 세칙은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03호, 2020.12.17.>

이 세칙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34호, 2021.06.23.>

이 세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74호, 2024.06.25.>

이 세칙은 202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 <2020.6.8.>

■ 특수검사업무세칙 [별표 2] <개정 2007.1.4., 2012.4.23., 2020.1.3., 2024.06.25.>

최초검사결과표(제7조제3항 관련)

1. 삭도시설

가. 지주검사표

7 13	지주	간격	고 기	서 차	지주	높이	비고
구 분	설계치	측정치	설계치	측정치	설계치	측정치	112
구동활차 ~ 1호지주							
1호지주 ~ 2호지주							
2호지주 ~ 3호지주							
3호지주 ~ 4호지주							
4호지주 ~ 5호지주							
5호지주 ~ 6호지주							
6호지주 ~ 7호지주							
7호지주 ~ 8호지주							
8호지주 ~ 9호지주							
9호지주 ~ 10호지주							
10호지주 ~ 11호지주							
11호지주 ~ 12호지주							
12호지주 ~ 13호지주							
13호지주 ~ 14호지주							
14호지주 ~ 15호지주							
15호지주 ~ 16호지주							
16호지주 ~ 17호지주							
17호지주 ~ 18호지주							
18호지주 ~ 19호지주							
19호지주 ~ 20호지주							
20호지주 ~ 반전활차							

- 주) 측정치는 설계치와 비교하여 다음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설계서안전도검사를 다시 받아 야 한다. 단, 서류로 증명될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지주간격 및 선로수평거리: 설계치의 5% 이내
 - 2. 고저차 및 지주높이: 1미터 이내

나. 설비검사표

장 치 별	ι	H &	설 계 치	검사결과	비고
1. 감 속 기	형식	및 제작사			
1. 1 7 /	감	속 비			
	형식	및 제작사			
	전 약	압 · 전 류			
2. 전 동 기	극	수			
	출	럭			
	회	전 수			
	구동	활차 직경			
	반전	활차 직경			
3. 활 차	유 도 활 차(1)				
	유 도 활 차(2)				
	<u> </u>	도 활 차(3)			
	スえℷ	매다는 와이어로프용			
4. 중 추	중추식	끄는 와이어로프용			
	유 (공) 압식			
	높	0]			
		폭			
5. 차 량	길	0]			
	정	원			
	중	량			

- 주) 1. 활차직경 및 차량은 설계치와 비교하여 1/100범위 이내일 것
 - 2. 중추는 설계치와 비교하여 10/100범위 이내일 것
 - 3. 차량중량은 설계치와 비교하여 3/100범위 이내일 것

2. 삭도시설 제외 궤도시설 <신설 2012.4.23.>

가. 선로검사표

구 분	운행	시간	최대7	경사각	. ਬੀ ਹ
1 正	설계치	측정치	설계치	측정치	
()정류장 ~ ()정투	부장				

- 주) 측정치는 설계치와 비교하여 다음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설계서안전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단, 서류로 증명될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 1. 운행시간: 케이블철도, 톱니바퀴식모노레일에만 적용 및 설계치의 ±5% 이내
 - 2. 최대경사각: 설계치의 +5% 이내

나. 설비검사표

장 치 별	내 용	설 계 치	검 사 결 과	비고
	형식 및 제작사			
1. 감 속 기	감 속 비			
	형식 및 제작사			
	전압, 전류			
2. 전 동 기	극 수			
	출 력			
	회 전 수			
3. 활 차	구동활차직경			
	높 이			
	폭			
4. 차 량	길 이			
	정 원			
	중 량			
5. 중 추	중 량			
6. 레 일	규 격			

- 주) 1. 활차직경·시브·드럼 또는 피니언은 설계치와 비교하여 1/100범위 이내일 것
 - 2. 중추는 설계치와 비교하여 10/100범위 이내일 것
 - 3. 레일은 설계치와 비교하여 설계강도 이상일 것
 - 4. 차량중량은 설계치와 비교하여 3/100범위 이내일 것

다. 기 타

궤도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검사항목을 추가 적용할 수 있다.

[별표 2의2](제7조제3항 관련) <삭제 2012.4.23>

[별표 3] (제7조제3항 관련) <개정 2007.1.4, 2008.2.13, 2012.4.23>

설계서안전도검사결과표

1. 삭도시설

법조항	검사내용	건 설 기 준	검사결과	적부	비고	
건설고시	삭도 및 와이어로프의	○ 매다는 와이어로프 및 차량 하단: 지표면으로부터 5m 이상				
제4조	높이	○ 매다는 와이어로프 이외의 와이어 로프: 지표면으로부터 5m 이상				
제5조	매다는 와이어로프의 기울기	○ 수평선으로부터 30도 이내				
제6조	차량과 건조물과의 간격	○ 차량과 건조물 또는 지주와의 안전거리: 차량 높이의 1/5 이상				
		○ <i>끄</i> 는 와이어로프: 1줄 보조 와이어 로프 설치 또는 매다는 와이어 로프에 작용 제동기 설치				
제7조	와이어로프의 설치	○ 매다는 와이어로프: 한쪽끝에는 2중 크램프장치				
			○ 와이어로프의 한쪽 끝은 긴장시 설을 설치할 것			
		○ 매다는 와이어로프 형식: 록크드 코일형 또는 헬큐레스형				
		○ 매다는 와이어로프 주소선 인장 강도: 1㎡에 대하여 210kg 이하				
제8조	와이어로프의 강도	○ 매다는 와이어로프 이외 와이어 로프 주소선의 인장강도: 1㎡에 대하여 210kg 이하(도금종의 경 우 1㎡에 대하여 200kg 이하)				
		 ○ 감기구동활차와 와이어로프 직경비: D₁ /d≥80 				
		○ 유도활차와 와이어로프 직경비: D ₂ /d≥70				
		○ 와이어로프의 상층소선직경과 와이어로프 직경의 비: δ≥ d/20				

법조항	검사내용	건 설 기 준	검사결과	적부	비고
제9조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 매다는 와이어로프 최대인장응력에 대한 안전계수: 5 > σ/σt > 3.5 최대굽힘응력에 대한 안전계수: σ/(σt + σb) > 3 ○ 매다는 와이어로프 이외의 와이어 로프: σ/σt > 5 			
		○ 하중에 충분히 견딜 것			
		○ 철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 강도를 가질것			
		○ 지주경간: 와이어로프 길이가 2,000m 이하			
		○ 슈의 곡률반경: 매다는 와이어로 프 지름의 300배 이상(3.6™ 이하 200배 이상)			
제10조	지주 및 공작물의 강도 등	운전에 의한 차량 구심가속도: 1. 5% 이하			
		○ 매다는 와이어로프가 슈에 미치는 압력: 20kg/c㎡ 이하			
		○ 매다는 와이어로프 구배: 15도 이하			
		○ 수삭륜의 굴절각: 5도 이하			
		○ 수삭륜 지름: 250mm 이상			
		○ 운전속도 매초 3.6미터 초과: 수 삭륜 홈에는 연질라이너 사용			
		ㅇ 주원동기외 예비원동기 설치			
제11조	운전설비	 차량하단과 지표면 또는 해면과 의 높이 100미터 초과, 선로길이 가 2000미터 초과: 별도차량 구 조방식 또는 활차직적구동방식일 것 			
		○ 주원동기 킬로와트 KW > 0.0098×(Tt-Ts)×V/η			
		예비원동기: 소정 운전속도의 20% 이상			

법조항	검사내용	건 설 기 준	검사결과	적부	비고
		○ 가감속도: 0.3吩 이하			
제12조	속도제어	제어방식: 리액터 또는 다이리스 터 이와 동등 이상			
제13조	인장력확보장치	○ 3.6m/s 초과: 인장력을 동일하게 하는 장치설치			
		○ 속도계			
		○ 차량위치표시기			
		○ 풍속계			
		○ 응급하강장치			
		○ 신호 및 통신시설			
		○ 차량출발신호			
	14조 보안설비 등	제동장치:구동축: 상용, 비상구동활차: 비상			
제14조		 속도감속장치 정류장진입속도감속장치 (운전속도 3.6% 이상 설비) 지주진입감속장치 (운전속도 5.0% 이상 설비) 			
		○ 피뢰장치			
		○ 차량접근경보장치			
		○ 정류장 과진입충격 흡수장치			
		○ 과속방지장치			
		○ 조명설비			
		○ 반전부 확인 폐쇄회뢰장치			
		○ 주행륜: 지름 200mm 이상 (록크드코일일 경우 150mm 이상)			
제15조	차량의 구조	○ 동요흡수장치			
		○ 철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법조항	검사내용	건 설 기 준	검사결과	적부	비고
		○ 비상탈출 가능 구조			
		○ 와이어로프의 점검, 검사하는 설 비 갖출 것			
		○ 와이어로프 구배 30도 이상: 소 케트식 이상			
		○ 차량 넓이 (여객 1인에 대하여) : 0.18㎡ 이상			
		○ 전부, 후부에 표시등 설치			
제16조	운전속도	○ 운전속도: 10 ^m / _s 이하			
제17조	사무이 누시	○ 차량 하단: 지표면으로부터 0.5미 터 이상			
세1/소	삭도의 높이	○ 보호설비: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지역			
제18조	매다는 와이어로프의 기울기	○ 수평면으로부터 45도이내			
2)] 0 0 Z	차량과 건조물과의	○ 차량과 건조물 및 여객과의 안전 거리: 0.5m 이상			
제20조	거리	○ 지주와 차량의 안전거리: 차량 높이의 1/5 이상			
2)]O1 -Z	어거리하이 그것	○ 와이어로프 지름 감소에 자동적 으로 조일 수 있는 구조일 것			
제21조	연결장치의 구조	○ 12인승 이상: 연결장치 2개 이상 설치			
		○ 매다는 와이어로프 및 끄는 와이어 로프 인장강도: 1㎜에 대하여 21 0kg 이하(도금종의 경우 1㎜에 대하여 200kg 이하)			
제22조	와이어로프의 강도	ㅇ 마심 또는 섬유심일 것			
		 접합부는 롱스플라이스방식으로 1 개소에만 연결될 것(선로길이가 2 천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2천미터마 다 1개소 설치) 			

○ 와이어로프이탈감지장치 ○ 반연결방지장치 ○ 전압계, 전류계 ○ 역전방지장치 또는 역전감지장치 ○ 연결장치이상검출장치 ○ 차량 수용시설 ○ 차량과 와이어로프의 동일속도 주 행장치 ○ 역주방지장치 ○ 교대발차연동장치 ○ 신호통신시설 ○ 폐쇄식 차량: 12초 또는 정원×1.1 초중 긴시간 이상 ○ 개방식 차량: 5초 또는 4+n/2초 중 긴시간 이상 ○ 간정속도: 8m/s 이하 ○ 정류장내 속도	
제23조 보안설비 ○ 전압계, 전류계 ○ 역전방지장치 또는 역전감지장치 ○ 연결장치이상검출장치 ○ 차량 수용시설 ○ 차량과 와이어로프의 동일속도 주행장치 ○ 역주방지장치 ○ 교대발차연동장치 ○ 신호통신시설 ○ 폐쇄식 차량: 12초 또는 정원×1.1초중 진시간 이상 ○ 개방식 차량: 5초 또는 4+n/2초 중 진시간 이상 ○ 개방식 차량: 5초 또는 4+n/2초 중 진시간 이상 ○ 운전속도: 8m/s 이하 ○ 정류장내 속도	
지23조 보안설비 ○ 역전방지장치 또는 역전감지장치 ○ 연결장치이상검출장치 ○ 차량 수용시설 ○ 차량과 와이어로프의 동일속도 주 행장치 ○ 역주방지장치 ○ 교대발차연동장치 ○ 신호통신시설 ○ 폐쇄식 차량: 12초 또는 정원×1.1 초중 긴시간 이상 ○ 개방식 차량: 5초 또는 4+n/2초 중 긴시간 이상 ○ 운전속도: 8m/s 이하 ○ 정류장내 속도	
지23조 보안설비	
제23조 보안설비 ○ 차량 수용시설 ○ 차량과 와이어로프의 동일속도 주 행장치 ○ 역주방지장치 ○ 교대발차연동장치 ○ 신호통신시설 ○ 폐쇄식 차량: 12초 또는 정원×1.1	
○ 차량 수용시설 ○ 차량과 와이어로프의 동일속도 주 행장치 ○ 역주방지장치 ○ 교대발차연동장치 ○ 신호통신시설 ○ 폐쇄식 차량: 12초 또는 정원×1.1 초중 긴시간 이상 ○ 개방식 차량: 5초 또는 4+n/2초 중 긴시간 이상 ○ 안전속도: 8m/s 이하 ○ 정류장내 속도	
행장치	
○ 교대발차연동장치 ○ 신호통신시설 ○ 폐쇄식 차량: 12초 또는 정원×1.1 초중 긴시간 이상 ○ 개방식 차량: 5초 또는 4+n/2초 중 긴시간 이상 ○ 운전속도: 8m/s 이하 ○ 정류장내 속도	
○ 신호통신시설 ○ 폐쇄식 차량: 12초 또는 정원×1.1 초중 긴시간 이상 ○ 개방식 차량: 5초 또는 4+n/2초 중 긴시간 이상 ○ 운전속도: 8m/s 이하 ○ 정류장내 속도	
지24조	
제24조 차량 간격 초중 긴시간 이상 이 개방식 차량: 5초 또는 4+n/2초 중 긴시간 이상 ○ 운전속도: 8m/s 이하 제25조 운전속도	
이 개방식 차량: 5초 또는 4+n/2초 중 긴시간 이상 이 운전속도: 8m/s 이하 제25조 운전속도	
제25조 운전속도 O 정류장내 속도	
- 폐쇄식: 0.5m/s 이하 - 개방식: 1.0m/s 이하	
제27조 차량 간격 ○ 고정식연결장치: 8초 이상	
○ 운전속도 - 폐쇄식: 6m/s 이하 제28조 운전속도 - 개방식: 3m/s 이하	
○ 정류장내 속도(폐쇄식): 0.5m/s 이 하	
○ 한줄의 매다는 와이어로프에 의한 제30조 견인식삭도 것일것	
○ 운전속도: 5m/s 이하	

법조항	검 사 내 용	건 설 기 준	검사결과	적부	비고
		○ 보안설비 - 속도계 - 전류계 - 전류계 - 와이어로프이탈방지장치 - 비상제동장치 - 승객과진입방지장치 - 피뢰장치			
		○ 구동활차와 와이어로프 직경 비: 70배 이상			
		○ 차량: 철구조 및 완충식 일 것			
		○ 차량 간격: 6초 이상			
		○ 운전속도: 3m/s 이하			
제32조	화물삭도	○ 보안설비- 속도계- 비상제동장치- 피뢰장치- 신호통신설비			
		○ 구동활차와 와이어로프 직경비 : 70배 이상			
		○ 차량 : 철구조 또는 동등 이상			

2. 케이블철도

법조항	검 사 내 용	건 설 기 준	검사결과	적부	비고
건설고시 제51조	선로의 구배	○ 선로의 구배: 수평선으로부터 45도 이내			
		○ 주소선의 인장강도: 1㎜에 대하여 210kg 이하(도금종의 경우 1㎜에 대 하여 200kg 이하)			
제53조	와이어로프의 설치	○ 감기구동활차와 와이어로프의 직 경비: D/d≥80			
		○ 와이어로프의 상충소선직경과 와 이어로프 직경의 비: δ≥ d/20			
		○ 최대인장력에 대한 안전계수: 8 < B/T			
제54조	와이어로프의 강도	 최대인장응력과 최대굽힘응력에 대한 안전계수: σ/(σt + σb) > 4 			
		 차량 넓이 (여객 1인에 대하여): 0.2 8㎡ 이상(입석승객을 위한 신체지지 설비 설치시 0.18㎡ 이상) 			
		○ 하중에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제55조	차량의 구조 등	o 비상탈출 가능구조			
		○ 차량연결: 3량 이내			
		○ 신체지지시설			
		○ 야간운행 차량: 객실내 조명설비			
제57조	분기소	○ 자동식으로 차량 유도 가능 구조			
\ \(\sigma\)	T/12	○ 분선의 유효길이: 분기차량에 대하 여 충분한 길이 이상			
제58조	원동기	○ 주원동기 킬로와트 KW > 0.0098×(Tt-Ts)×V/n			
		○ 상용 및 비상용 제동장치			
제60조	보안장치	○ 출발신호장치			
		○ 통신설비			

법조항	검사내용	건 설 기 준	검사결과	적부	비고
		○ 정류장 과진입 충격 흡수장치			
		○ 비상구조장치			
		○ 선로 기울기 5도 이상: 차량 의 경사구배 자동조절장치			
제62조	운전속도	○ 운전속도: 40km/h 이하			

3. 톱니바퀴식 모노레일, 화물모노레일

법조항	검 사 내 용	건 설 기 준	검사결과	적부	비고
건설고시 제67조	선로의 구배	○ 선로의 구배: 45도 이내			
제68조	구동톱니바퀴 등	○ 하중에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차량 넓이 (여객 1인에 대하여): 0.28㎡ 이상(입석승객을 위한 신체지지설비 설치시 0.18㎡ 이상) 			
		○ 하중에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제69조	차량의 구조	○ 비상탈출 가능구조			
		○ 신체지지시설			
		○ 야간운행 차량: 객실 내 조명설비			
제70조	분기소	○ 자동식으로 차량 유도 가능 구조			
세/0조	七 / 全	○ 분선의 유효길이: 분기차량에 대 하여 충분한 길이일 것			
제71조	원동기	○ 주원동기 킬로와트 KW=F×V/6120×η			
		○ 상용 및 비상용 제동장치			
		○ 출발신호장치			
		○ 통신설비			
제73조	보안장치	○ 정류장 과진입 충격 흡수장치			
		o 비상구조장치			
		○ 선로 기울기 5도 이상: 차량의 경사구배 자동조절장치			
제75조	운전속도	○ 운전속도: 40km/h 이하			
제76조	화물모노레일	 보안설비 비상제동장치 통신설비 차량 과진입 충격 흡수장치 			
		○ 차량: 철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			

^{4.} 일반 모노레일, 노면전차, 자기부상열차, 경전철 : 설계서안전도검사결과표는 건설고시 및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에 규정된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3의2] (제7조제3항 관련) <삭제 2012.4.23.>

[별표 3의3]

시험운행 적정성 검토결과표

1. 삭도시설

점검항목	적합	개선	보완	해없음	비고 (관련근거 등)		
1. 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 시행 계획의	1. 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 시행 계획의 적정성						
○ 시험운행 실시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시행계획의 내용은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가? - 시험운행 일정 - 시험운행 절차 및 방법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시험운행 실시 조직 및 인력 -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 안전관리계획 및 그 실행조직 - 비상대응계획 - 그 밖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 40시간이상 시험운행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2. 시험운행 결과서의 적정성							
2-1. 시운전							
○ 시운전 테스터가 반영 되었는가? - 최고속도 테스트 - 운전전류 테스트 - 차량간격 테스트 - 정위치 정차 테스트							
○ 검증시험 항목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2-2. 선로							
○ 선로에 관한 시험운행 항목이 반영 되었는가? - 지주간 간격 및 고저차, 지주높이 - 수삭륜 센터링 - 탈삭(이탈) 방지 장치 스위치 기능							

점검항목	적합	개선	보완	मं रिक्षे	비고 (관련근거 등)
- 선로의 최대경사각 - 타워 접지저항 - 선로 총 운행시간					
○ 부하에 의한 하중 테스터가 반영 되었는가? - 부하 테스트 - 제동력 테스트 - 긴장력(압) 확인 - 중추 또는 실린더 길이 확인					
와이어로프 스플라이스 작업보고서가 반영 되었는가?					
○ 검증시험 항목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2-3. 차량					
○ 차량 연결장치(Grip) 슬립테스터, 장력 상태 확인이 반영 되었는가?					
○ 차량 연결장치(Grip) 분해점검 장비에 의한 분해가 반영 되었는가?					
○ 차량 간 간격 테스터가 반영 되었는가?					
○ 차량중량 테스터가 반영 되었는가?					
○ 소켓팅 작업보고서가 반영 되었는가?					
○ 검증시험 항목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2-4. 안전장치					
○ 보완(안전)장치 테스터가 반영 되었는가?					
○ 검증시험 항목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2-5. 전기(신호, 통신)					
○ 절연저항 테스터가 반영 되었는가?					
○ 신호, 통신시설 테스터가 반영 되었는가?					
○ 검증시험 항목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2-6. 기타					

점검항목	적합	개선	보완	하였음	비고 (관련근거 등)
○ 종사원 예비원동기 운행 테스터가 반영 되었는가?					
○ 비상구조 테스터가 반영 되었는가?					
3. 기 타					
○ 운행 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선로주변 등)들이 검토 되었는가?					-
○ 시험운행 완료 후 그 결과를 관할행정 기관에 통보하는가?					
4. 운영관리체계(영업운전) 적정성					
○ 운영관리 조직 등이 갖추어져 있는가? - 운영관리 및 안전조직, - 운전자, 점검정비자, 탑승보조자 확보 - 비상 시 조치능력 및 매뉴얼 구비					

주) 운영관리체계(영업운전) 적정성 여부는 변경 검사시만 적용

2. 궤도시설

점검항목	적합	개선	보완	하당음	비고 (관련근거 등)	
1. 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 시행 계획의	1. 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 시행 계획의 적정성					
○ 시험운행 실시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시행계획의 내용은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가? - 시험운행 일정 - 시험운행 절차 및 방법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시험운행 실시 조직 및 인력 - 시험운행에 사용되는 시험기기 및 장비 - 안전관리계획 및 그 실행조직 - 비상대응계획 - 그 밖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점검항목	적합	개선	보완	해당없음	비고
○ 40시간 이상 시험운행을 실시 하였는지 여부					(관련근거 등)
2. 시험운행 결과서의 적정성					
2-1. 시운전					
○ 시운전 테스터가 반영 되었는가? - 최고속도 테스트 - 운전전류 테스트 - 정위치 정차 테스트 - 기상환경에 따른 운행 테스트					
○ 검증시험 항목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2-2. 선로					
○ 선로에 관한 시험운행 항목이 반영 되었는가? - 선로 총 운행시간 - 지점별 선로의 최대경사각 - 레일 및 레크 고정상태 - 박아넣은 지주(타공지주) 지지력 - 신축이음 연결부의 상태					
○ 검증시험 항목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2-3. 차량					
○ 부하에 의한 하중 테스터가 반영 되었는가?- 부하 테스트- 제동력 테스트					
○ 차량 기능검사가 반영 되었는가?					
○ 차량 중량 테스터가 반영 되었는가?					
○ 비상시 차량 간 구원(견인)테스트가 반영 되었는가?					
○ 검증시험 항목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2-4. 안전장치					
○ 보완(안전)장치 테스터가 반영 되었는가?					

점검항목	적합	개선	보완	하당않음	비고 (관련근거 등)	
○ 비상시 브레이크 장치 테스터가 반영 되었는가?						
○ 검증시험 항목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2-5. 전기(신호, 통신)						
○ 절연저항 테스터가 반영 되었는가?						
○ 신호, 통신시설 테스터가 반영 되었는가?						
○ 검증시험 항목 결과의 판정은 적정한가?						
2-6. 기타						
○ 관제기능(관제실)이 있는 경우 관제실 기능 테스트가 반영 되었는가?						
○ 비상구조 장비가 구비 되었는가?						
3. 기 타						
○ 운행 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선로주변 등)들이 없는가?						
○ 시험운행 완료 후 그 결과를 관할행 정기관에 통보하는가?						
4. 운영관리체계(영업운전) 적정성	4. 운영관리체계(영업운전) 적정성					
○ 운영관리 조직 등이 갖추어져 있는가? - 운영관리 및 안전조직, - 운전자, 점검정비자, 탑승보조자 확보 - 비상 시 조치능력 및 매뉴얼 구비						

주) 운영관리체계(영업운전) 적정성 여부는 변경 검사시만 적용

3.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점검항목	적합	개선	보완	部語	비고 (관련근거 등)
1. 운영관리체계(영업운전) 조직의 적정성					·
○ 운영관리 조직 등이 갖추어져 있는가? - 운영관리 및 안전조직, - 운전자, 점검정비자, 탑승보조자 확보					
2.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시행계획의 내용은 관련 기준을 포함하는가? - 자체 점검정비계획 - 부품관리계획 - 인력운영 및 교육에 관한사항 - 화재·정전·고장 등으로 인한비상시 조치 매뉴얼 - 주요부품 오버홀 기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3-1. 안전관리 계량목표 설정					
○ 계량목표가 반영 되었는가?					
3-2. 자체 점검계획					
○ 일상점검 계획이 반영 되었는가?					
○ 정기점검 계획이 반영 되었는가?					
○ 안전검사 계획이 반영 되었는가?					
○ 시설 점검·정비 계획이 반영 되었 는가?					
○ 점검기기 검·교정 계획이 반영 되었 는가?					
3-3. 부품관리계획					
○ 주요부품 구매계획은 반영 되었는가?					

					비고	
점검항목	적합	개선	보완	部語	비고 (관련근거 등)	
○ 예비부품 관리대장은 반영 되었는가?						
3-4. 종사원 인력운영 및 교육						
○ 종사원 보유 인력현황 및 운영계획이 반영 되었는가?						
○ 종사자 훈련계획은 반영 되었는가?						
○ 종사자 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반영 되 었는가?						
3-5. 화재·정전·고장 등 비상훈련계획						
○ 화재·정전·고장 등 세부 매뉴얼이 마련 되었는가?						
○ 비상훈련 계획이 마련 되었는가?						
○ 풍우시의 세부 운영기준이 마련 되었 는가?						
○ 비상시 매뉴얼(비상가동 및 비상구조)이 마련 되었는가?						
○ 비상구조 장비가 구비 되었는가?						
3-6. 주요부품 오버홀 계획						
○ 주요부품의 오버홀 또는 교체 기준이 마련되었는가?						
○ 비상구조 테스터가 반영 되었는가?						
○ 비상구조 장비가 구비 되었는가?						
4. 기 타						
○ 기타 안전을 위한 안전그물망, CCTV 등 설치 규정이 마련되었는가?						

주)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검토는 신규 검사만 적용

[별표 4](제8조 관련) <개정 2007.1.4., 2012.4.23., 2019.7.19., 2020.1.3.>

검사수수료 산출기준

		궤 도 검 사					
구 분	정 밀 도 검 사	안전검사, 특수시설 검사, 시험운행 적정성 검토					
기 거시스스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를 기준으로						
가. 검사수수료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직	접경비+제경비+기술	울료)을 적용				
ા ગઝાં અંગ મો	검사소요시간×시간당노임단가(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다. 직접인진미	나. 직접인건비 기계/설비 및 전기부문의 노임단가 범위에서 정한금액)						
	(기준년도의 직접경비×정밀도	공단의					
다. 직접경비	검사 점유율×해당기기 점유율)	"여비규정"	-				
	/ 해당기기 검사대수	적용					
라. 제경비	나항의 115% 적용	나항의 120% 적용					
마. 기술료	나항 및 라항의 합한 금액의 30% 적용	나항 및 라항의 합한 금액의 40% 적용					
바. 기술자 적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기술 자격기준 적용 등급							

- 주) 1. 정밀도검사비율은 안전도측정기기와 환경측정기기의 검사대수 점유율임.
 - 2. 해당기기 점유율은 안전도측정기기 검사대수중 수수료산정 대상기기의 점유율임.
 - 3. 해당기기 검사대수는 수수료산정 대상기기의 연간 검사대수임.
 - 4. 산정된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별도임.
 - 5.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은 수수료 재산정 시 적용

■ 특수검사업무세칙 [별표 5] <개정 2007.1.4, 2008.2.13., 2017.2.1., 2019.7.19., 2024.06.25..>

검사소요시간(제8조 관련)

1. 정밀도검사

(단위 : 분)

구 .	브 단	정밀도검사	구조장치검사	도면심사	합 계
사이드슬립측정기(I)	최초·구변	22	8	30	60
(자동형)	정 기	22	-	-	22
사이드슬립측정기(Ⅱ)	최초·구변	22	6	30	58
(단순형)	정 기	22	-	-	22
제동시험기(I)	최초·구변	64	18	60	142
(자동축중형)	정 기	64	-	-	64
제동시험기(Ⅱ)	최초·구변	46	14	60	120
(단순형)	정 기	46	-	-	46
제동시험기(Ⅲ)	최초·구변	210	34	180	424
(차륜구동형)	정 기	210	-	-	210
속도계시험기(I)	최초·구변	18	17	30	65
(자동형)	정 기	18	-	-	18
속도계시험기(Ⅱ)	최초·구변	18	15	30	63
(단순형)	정 기	18	-	-	18
전조등시험기(I)	최초·구변	40	11	60	111
(자동형)	정 기	40	-	-	40
전조등시험기(Ⅱ)	최초·구변	40	11	60	111
(판정형)	정 기	40	-	-	40
전조등시험기(Ⅲ)	최초·구변	30	11	30	71
(단순형)	정 기	30	-	-	30
택시미터주행검사기	최초 · 구변	23	6	30	59
역시비타다행심하기	정 기	23	-	-	23
가스누출감지기	최초 · 구변	12	6	30	48
(1 GAS)	정 기	12	-	-	12
가스누출감지기	최초 · 구변	17	6	30	53
(2 GAS)	정 기	17	_	-	17

2. 궤도검사

가. 안전검사

1) 정기검사

가) 삭도시설

삭	도	검사		선로길	길이별 소요시	l간(h)	
종	류	분야	500m 이하	1000m 이하	1500m 이하	2000m 이하	2500m 이하
		기계	15.5	17	18.5	20	21.5
왕	복식	전기	15	15.5	16.5	17	17.5
		계	30.5	32.5	35	37	39
	페	기계	14.5	16.5	19.5	21.5	24.5
자	쇄	전기	14	14.5	16	17.5	18.5
자동순환식	식	계	28.5	31	35.5	39	43
환	개	기계	13	15	18	20	23.5
식	방	전기	12.5	13.5	15	16.5	18
	식	계	25.5	28.5	33	36.5	41.5
		기계	10.5	12	15	16.5	20
고 순	정 환식	전기	9.5	10	11.5	12.5	13.5
		계	20	22	26.5	29	33.5
		기계	7	7.5	7.5	8	8
견	인식	전기	7	7	7	7	7
	계		14	14.5	14.5	15	15
		기계	6	7	8.5	10.5	11.5
화	물식	전기	4.5	4.5	4.5	4.5	4.5
		계	10.5	11.5	13	15	16

주) 선로길이가 해당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500m마다 100분의 10을 가산 적용한다.

나) 케이블철도

궤 도 검사 종 류 분야	검사	선로길이별 소요시간(h)						
	분야	500m 이하	1000m 이하	1500m 이하	2000m 이하	2500m 이하		
	기계	7.5	8	8.5	9	9.5		
케이블철도	전기	5.5	5.5	5.5	5.5	5.5		
	계	13	13.5	14	14.5	15		

다) 모노레일 등

궤 도	검사		수송	량별 소요시	간(h)		
종 류	분야	50인 이하	100인 이하	150인 이하	200인 이하	250인 이하	
	기계	9.5	13	16.5	20	23.5	
톱니바퀴식 모노레일	전기	5.5	8	10.5	13	15.5	
	계	15	21	27	33	39	
일반모노레일,	기계						
자기부상열차, 노면전차,	전기						
철제차륜형경전철, 고무차륜형경전철, 선형유도전동기형 경전철	계		검사항목별	실검사 소요	시간을 적용		

라) 화물궤도

궤 도 종 류	검사	중량별 소요시간(h)						
	분야	1000kg 이하	2000kg 이하	3000kg 이하	4000kg 이하	5000kg 이하		
	기계	4.5	5	5.5	6	6.5		
화물 모노레일	전기	2	2	2	2	2		
	계	6.5	7	7.5	8	8.5		

- 주) 1. 케이블철도는 선로길이가 해당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500m마다 100분의 10을 가산 적용한다.
 - 2. 톱니바퀴식모노레일은 수송량이 해당항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인마다 100분의 10을, 화물모노레일은 수송하중이 해당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1000kg마다 100분의 10을 가산 적용한다.
 - 3. 톱니바퀴식모노레일 및 화물궤도는 선로길이 500m 기준으로 500m 초과 시 마다 100분의 10을 가산 적용한다.

2) 정밀안전검사

가)삭도시설

삭	도	검사		선로길	길이별 소요시	l간(h)	
종	도류	분야	500m 이하	1000m 이하	1500m 이하	2000m 이하	2500m 이하
	기계		25	26.5	28	29.5	31
왕	복식	전기	23	23.5	24.5	25	25.5
		계	48	50	52.5	54.5	56.5
	폐	기계	24	26	29	31	34
자	쇄	전기	22	22.5	24	25.5	26.5
자동순환식	식	계	46	48.5	53	56.5	60.5
む	개	기계	22.5	24.5	27.5	29.5	33
식	방	전기	21	22	23.5	25	26.5
	식	계	43.5	46.5	51	54.5	59.5
		기계	20	21.5	24.5	26	29.5
	정 환식	전기	17.5	18	19.5	20.5	21.5
		계	37.5	39.5	44	46.5	51
		기계	13.5	14	14	14.5	14.5
견	인식	전기	13	13	13	13	13
			26.5	27	27	27.5	27.5
		기계	11.5	12.5	14	15.5	16.5
화	화물식	전기	8.5	8.5	8.5	8.5	8.5
		계	20	21	22.5	24	25

주) 선로길이가 해당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500m마다 100분의 10을 가산 적용한다.

나) 케이블철도

궤 도 종 류	검사	선로길이별 소요시간(h)						
	분야	500m 이하	1000m 이하	1500m 이하	2000m 이하	2500m 이하		
	기계	12.5	13	13.5	14	14.5		
케이블철도	전기	10	10	10	10	10		
	계	22.5	23	23.5	24	24.5		

다) 모노레일 등

궤 도	검사		수송량별 소요시간(h)						
종 류	분야	50인 이하	100인 이하	150인 이하	200인 이하	250인 이하			
	기계	14.5	18	21.5	25	28.5			
톱니바퀴식 모노레일	전기	10	12.5	15	17.5	20			
	계	24.5	30.5	36.5	42.5	48.5			
일반모노레일,	기계								
자기부상열차, 노면전차,	전기								
철제차륜형경전철, 고무차륜형경전철, 선형유도전동기형 경전철	계		검사항목별	실검사 소요	시간을 적용				

라) 화물궤도

게 도 종 류	검사		중당	· 별 소요시긴	<u> </u>	
	분야	1000kg 이하	2000kg 이하	3000kg 이하	4000kg 이하	5000kg 이하
	기계	8	8.5	9	9.5	10
화물 모노레일	전기	5	5	5	5	5
	계	13	13.5	14	14.5	15

- 주) 1. 케이블철도는 선로길이가 해당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500m마다 100분의 10을 가산 적용한다.
 - 2. 톱니바퀴식모노레일은 수송량이 해당항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인마다 100분의 10을, 화물모노레일은 수송하중이 해당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1000kg마다 100분의 10을 가산 적용한다.
 - 3. 톱니바퀴식모노레일 및 화물궤도는 선로길이 500m 기준으로 500m 초과 시 마다 100 분의 10을 가산 적용한다.

3) 와이어로프 비파괴검사

종 류 시 간	와이어로프 비파괴검사
검사시간(h)	16

주) 1. 와어어로프 비파괴검사 및 진동검사는 추가 시 100분의 100을 추가 적용한다.

나. 특수시설검사

종류 시간	와이어로프 비파괴검사	짚라인검사	진동검사
검사시간(h)	16	8	8

- 주) 1. 와어어로프 비파괴검사 및 진동검사는 추가 시 100분의 100을 추가 적용한다.
 - 2. 짚라인검사는 추가 시 100분의 20을 추가 적용한다.
- 3. 기타시설 검사소요시간은 검사항목별 실검사 소요시간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다. 설계서 안전도검사 소요시간

1) 삭도검사

(단위: 시간)

검 사 항 목	왕복식	자 동 순환식	고 정 순환식	견인식
1. 제원정리	10.0	10.0	8.0	4.0
2. 와이어로프의 높이	1.0	1.0	1.0	-
3. 와이어로프의 기울기	2.0	2.0	1.0	1.0
4. 와이어로프와 지지물의 안전거리	1.0	1.0	1.0	1.0
5. 차량 구조	2.0	1.0	1.0	1.0
6. 차량 간격	-	1.0	1.0	-
7. 신호 및 통신시설	1.0	1.0	1.0	0.5
8. 운전속도	1.0	1.0	1.0	1.0
9. 긴장장치	3.0	1.0	1.0	0.5
10. 와이어로프의 강도	2.0	1.0	1.0	1.0
11. 보안설비	8.0	8.0	4.0	1.0
12. 지주의 강도	8.0	8.0	4.0	-

13. 소요동력 및 와이어로프의 인전계수	6.0	5.0	5.0	2.0
14. 결과검토	5.0	5.0	3.0	2.0
계	50.0	46.0	33.0	15.0

주) 차량의 대수·정원 또는 적재량의 증가, 지주의 위치 또는 높이변경, 운전속도의 증가 및 정류장 신설 또는 폐지 등에는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2) 궤도검사

가) 케이블철도

(단위 : 시간)

검 사 항 목	케이블철도
1. 제원정리	7.0
2. 와이어로프의 높이	-
3. 와이어로프의 기울기	1.0
4. 와이어로프의 지지물의 안전거리	-
5. 운반기구 구조	1.0
6. 운반기구 간격	-
7. 신호 및 통신시설	1.0
8. 운전속도	1.0
9. 긴장장치	1.0
10. 와이어로프의 강도	1.0
11. 보안설비	2.0
12. 지주(레일)의 강도	4.0
13. 소요동력 및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	5.0
14. 결과검토	3.0
계	27.0

주) 운전속도의 증가, 차량의 대수·정원 또는 적재량의 증가에는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나) 모노레일 등

(단위 : 시간)

검 사 항 목	일반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노면전차, 철제차륜형경전철, 고무차륜형경전철, 선형유도전동기형 경전철	톱니바퀴식 모노레일
1. 제원정리 2. 곡선반지름 및 선로의 구배		8.0
3. 운전속도		1.0
4. 보안장치5. 소요동력	검사항목별 실검사	2.0
6. 레일강도	소요시간을 적용	4.0
7. 와이어로프(또는 기어)의 강도 8. 차륜폭 및 플랜지의 두께		4.0 1.0
9. 통신시설 10. 결과검토		1.0
10. 설파검도 계	_	3.0 27.0

주) 운전속도의 증가, 차량의 대수·정원 또는 적재량의 증가에는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라. 시험운행적정성검토 소요시간

(단위 : 시간)

시험운행적정성 검토 항목	삭도/궤도시설 (수송량 100인 초과)	궤도시설 (수송량 100인 이하)
 시험운행계획 적정성 검토 시험운행 결과 적정성 검토 현장 확인 검토 결과보고서 작성 	1 8 16 1	1 4 8 1
계	26	14

주) 변경허가·변경승인 등의 시험운행적정성검토는 수수료를 제외한다.

■ 특수검사업무세칙 [별표 6] <개정 2020.12.11., 2024.06.25.>

교정검사 대상기기 및 주기(제12조 관련)

1. 기기정밀도검사

용 도	장 비 명	주 기	비고
1. 제동시험기용	○ 하중용 전자저울○ 축중교정용 Load Cell○ 롤제동시험기 교정기	12월 " "	
2. 전조등시험기용	○ 전조등시험기교정기 ○ 레이저 레벨	36월 12월	
3. 사이드슬립측정기용	○ 다이얼게이지 ○ 인장 저울	12월 24월	
4. 속도계시험기용	속도계시험기교정기	"	
5. 택시미터주행검사기용	○ 검사용 기준기	"	
6. 배출가스측정기용	○ 배출가스기록장치	"	
7. 매연측정기용	○ 흡인량측정장치○ 초시계○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	36월 24월 12월	
8. 소음측정기용	○ 표준음 발생기	12월	
9. 일반검사장비	 ○ 버니어캘리퍼스 ○ 전압전류측정기 ○ 내전압시험기 ○ 기록계 ○ 줄자 	12월 " " " 24월	

2. 궤도검사

기 기 명	교정주기	기 기 명	교정주기
버니어캘리퍼스	12월	전 류 계	12월
초 시 계	24월	표 면 온 도 계	12월
접 지 저 항 계	12월	인 장 동 력 계	12월
절 연 저 항 계	12월	토탈 스테이션	24월
멀티테스터	12월	열화상카메라	12월
레이저거리측정기	24월	각도측정기	12월
진동측정기	12월	진동변환기(센서)	12월
초음파두께측정기	12월		

■ 특수검사업무세칙 [별표 7] <개정 2013.7.30., 2015.5.19., 2024.06.25.>

안전도측정기기 검사장비 확보기준(제12조제3항 관련)

용 도	품 명	수 량	규 격
1. 제동시험기용	○ 제동력교정기 및 부속기기○ 축중교정기 및 부속기기○ 롤제동시험기 및 부속기기	12조 이상 12조 이상 3조 이상	
2. 전조등시험기용	○ 전조등시험기교정기 및 부속기기 □ 전조등시험기교정기 및 부속기기	12조 이상	
3. 사이드 슬립 측정기용	○ 다이얼게이지 및 부속기기 ○ 인장저울 및 부속기기	12조 이상 12조 이상	기계·기구의
4. 속도계시험기용	○ 속도계시험기교정기	12조 이상	정밀도검사용
5. 택시미터주행 검사기용	○ 검사용 기준기 및 부속기기	12조 이상	으로 적합할 것
6. 가스누출감지기용	○ 시험가스 또는 표준가스발생장치	12조 이상	
7. 일반검사장비	○ 버니어캘리퍼스○ 전압변환기○ 기타 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12개 이상 12개 이상 12조 이상	

- 주) 1. 검사용 장비의 확보수량은 공단전체 수량임.
 - 2. 롤제동시험기 및 부속기기는 업무담당 소속만 해당됨.

[별표 8] (제14조 관련) <신설 2021.6.23>

검사원 안전수칙

1. 기기정도검사 검사원

- ① 검사 업무를 위해 출장지로 이동하기 전 날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이동한다.
- ② 작업화, 장갑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 ③ 검사 시작 전 정비점검 및 검사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제동력시험기 롤러구동 모터의 전원 장치는 관계자 외에는 작동을 금지하는 스티커 를 부착 후 안전하게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 ⑤ 제동시험기의 축중ㆍ제동력 검사할 때에는 구동 모터 및 롤러 회전체에 신체 일부가 회전체에 말릴 위험이 없도록 복장을 단정히 하고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 ⑥ 제동시험기 롤러에 교정기 지그 설치 검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설비가 정지한 상태에서 교정용 지그를 탈착 및 제거하여야 한다.
- ① 시운전 검사를 할 때에는 차량의 주행에 간섭받지 않는 공간에서 수행해야 하며, 차량 주행방향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만, 차량 주행통로를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이동한다.
- ⑧ 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검사원의 안전에 위험이되는 경우에는 신청자 및 담당자에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

2. 궤도검사 검사원

- ① 검사 업무를 위해 출장지로 이동하기 전 날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이동한다.
- ② 안전모. 안전대. 작업화 등 개인 보호구 착용을 철저히 한다.
- ③ 지주와 같은 고공에서 검사할 때에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추락 방지용 안전대를

착용해야 하며, 착용 전에는 반드시 안전벨트, 고리 등의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 ④ 지주와 같은 고공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할 경우에는 점검용 사다리 또는 점검용 차량 등 안전한 방법으로 이동한다.
- ⑤ 점검용 사다리를 이용하여 검사할 때에는 사다리 외관상태 등을 확인하고, 거치할 때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보조 작업자를 배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 ⑥ 선로를 검사할 때에는 야생동물(뱀, 벌 등)의 유무에 주의해야 하며, 업무 중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휴식 공간을 이용해야 한다.
- ⑦ 와이어로프를 검사할 때에는 안전한 공간에서 검사 업무를 시행해야 하며, 움직이는 와이어로프에 손이나 옷 등이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⑧ 검사원과 운전자 간 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 상호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운행 전에는 반드시 상호 안전 상태를 점검한 후 운행한다.
- ⑨ 분야별로 검사할 때에는 검사원과 운영사 직원이 동반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 검사원 1인이 검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무선통신 장치를 휴대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풍속 등 기상정보를 확인하여 이상 없는 경우에 검사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실외검사 중 갑작스럽게 눈·비 또는 강풍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검사 업무를 즉시 중단한다.
- ① 감기구동장치를 검사할 때에는 회전체에 신체 접촉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신체 일부가 회전체에 말릴 위험이 없도록 복장을 단정히 하고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 ① 회전체 진동 측정 등의 검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설비가 정지한 상태에서 센서를 탈·부착하여야 한다.
- ③ 변압기 등 전기기기를 검사할 때에는 잔류 전하를 충분히 방전시키고 검전기를 이 용해 단전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시운전 검사를 할 때에는 차량의 주행에 간섭받지 않는 공간에서 수행해야 하며, 차

량 주행방향으로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만, 차량 주행통로를 이동해야 할 경 우에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이동한다.

(15) 검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며, 검사원의 안전에 위험이되는 경우에는 운영사에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 업무를 거부할 수 있다.

■ 특수검사업무세칙 [별표 9] <신설 2024.06.25.>

검사원 기술인력 교육기준(제16조제2항 관련)

1. 기기정도검사

구 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기기정도검사	الم الحالية	·「자동차관리법」
	관련 법령 자동차 검사기기 및 기기정도검사 실무(안전 및 현장교육)	16시간 이상	· 「환경분야 시험 •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신규 교육		104시간 이상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KS Q ISO/IEC 17020 적합성평가 - 검사기관 운영에 관한 요구사항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기기정도검사 관련 법령	3시간 이상	· 「자동차관리법」
		3/12 Tra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5시간 이상	· 자동차 검사기기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정기	기기정도검사 실무		·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			·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부적합 코드 판정 관리
	검사업무 표준화	2시간 이상	· 검사 부적합 사례 분석
			· 신규 측정기기 검사방법 고도화

2. 궤도검사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내용
신규	궤도구조론 및 관련 법령 구조검토방법	24시간 이상	· 궤도운송법 · 궤도구조론
교육	검사기기 및 현장실무 (안전교육,현장교육등)	80시간 이상	· 검사기기 운영관리 · 검사방법 및 판정 관리
	궤도검사 관련법령	4시간 이상	· 궤도운송법 · 안전검사기준 및 요령
정기 교육	현장실습 및 시스템교육	4시간 이상	· 검사요령 및 판정 관리
	검사측정밥법 및판독요령	8시간 이상	· 정밀안전검사 방법 및 판독 · 정밀보고서 작성방법

[별지 제1호서식](제6조제1항 관련) <개정 2008.2.13>

기기정도검사 신청서 접수대장

번호	접수일	업 체 명	신청자	수량	검사구분	검사일	결 과	결 재

297mm×210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0.6.8.>

[별지 제3호서식](제6조제1항 관련) <삭제 2020.6.8>

[별지 제4호서식](제6조제1항 관련) <삭제 2020.6.8.>

[별지 제4호의2서식](제6조제1항 관련) <삭제 2020.6.8>

[별지 제5호서식](제6조제1항 관련) <개정 2008.2.13, 2012.4.23>

궤도검사 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업체명	신청자	종류 및 선로수	검사구분	수검희망일	비고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70g/m² [별지 제6호서식](제6조제2항 관련) <개정 2008.11.10, 2009.210>

검사일정변경대장

번호	업	체	명	대표자	계획일	변경일	변경사유	송신자	수신자	결 재

297mm×210mm 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제6조제4항 관련) <삭제 2020.6.8>

■ 특수검사업무세칙 [별지 제8호서식](제7조제1항 관련) <개정 2009.2.10, 2012.4.23., 2013.7.30., 2018.01.01., 2020.1.3., 2024.06.25.>

□ 최 초 기계・기구 □ 정 기 정밀도검사표 □ 구 변

검사일자: 검사자: (인) 업 체 대 표 자 기기 설치소재지 (전 화: 기 기 명 칭 식 제 작 회 사 제 작 번 호 규 격 비고 사이드슬립측정기 ton 제 동 시 험 기 ton 속 도 계 시 험 기 ton 전 조 등 시 험 기 m 검 사 결 과 측 정 검사항목 및 검사항목 및 결과 결괴 정 밀 도 기 준 측정값 정 밀 도 기 준 기 검 사 조 건 기 검 사 조 건 측정값 10.000 cd ① 광도지시: 단 20,000 cd ±15% 이내 ① 좌 • 우 제 동력지 계 30,000 cd 좌 시 2 174mm 단순형 및 판정형 348mm 딘 ±5% 이내 1. 계 174mm ② (각도,광도) 3. 우 348mm 1 변화시) 광축편 차륜구동형: 제 단 차: 상 174mm ±2% 이내 행 계 ±29/174mm 174mm (1단계 전류. 하 (1/6도) 이내 빔 2 348mm 2단계 호류) 단 10,000cd 29mm 전 계 도 30.000cd 29mm 주 동 12,000cd ③ 판정 정밀도 ② 합계제 동력지시: 등 광도:±1,000d 15,000cd 시 이내 1 0cm 상 ③ 차이제동력지시: 좌 험 하 3 Ocm ±5% 이내 광축: 우 1 5cm 기 축 좌 시 ±29/174mm 3 Ocm ④ 중량설정지시: (1/6도) 이내 3 Ocm ±5% 이내 **(A)** 71 타 구조・장치 작동상태의 정상여부 주 ⑤ 판정및 의견 ⑤ 제동력합계 험 판정:±2% 이내 IN측 작동시 4. ① "0" 지시: 차) (±0.2mm/m OUT측 작동시 사 좌 ⑥ 제동력차이 판정:±2% 이내 우 IN축 οl ②5mm 지시: 기 ⑦ 롤러마모도: 전 좌 전 우 ±0.2mm/m OUT측 _ 기준직경의 2%미만 후좌 IN축 5mm/m ③**平** 정: 8 기 타 구조·장치 작동상태의 정상여부 슬 ±0.2mm/m OUT축 5mm/m 립 ⑨ 판정및 의견 ④답판작동력 작동시작점 시작: 4kg이내 측 ① 속도지시: 4 0 Km/h 5mm/m점 5mm: 8kg이내 ±3% 이내 정 2. ⑤기___ 6 0 Km/h 타 구조ㆍ장치 작동상태의 정상여부 정: 32.0 Km/h 기 ⑥판정및 의견 속 ±1.0 Km/h이내 44.4 Km/h 전좌 전우 후좌 후우 구조·장치 작동상태의 정상여부 ③ 롤러마모도: ① 결과표시: 정밀도검사기준에 적합시 ○, 부적합시 ×로 기록 ② 판정 및 의견: 검사기준에 적합시는 "합격", 부적합시는 " 불합격"으로 표기하고, 불합격의 경우는 그 내용을 기록 기준직경의 2%미만 계 ④ 기 타 시 ③ 최초 및 구조변경밀도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기구의 작 구조·장치 검사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4 단순형 측정기기(일반정비업체용 기계, 기구 포함) 의 판정장치 험 ⑤ 판정및 의견 기 작동상태는 검사하지 않는다.

> 210 mm × 297 mm (일 반용지80g/m²)

■ 특수검사업무세칙 [별지 제8호의2서식](제7조제1항 관련) <신설 2020.1.3., 개정 2024.06.25.>

□ 최 초 기계・기구 □ 정 기 정밀도검사표 □ 구 변

검시	나일자 :						•	_		검ㅅ	사:			(인)		
	업 체 명									대 표	타자					
	기기 설치소재지												(전 화:)
	기 기 명 칭			형	식		제 ?	각 회 사	_	제	작 반	호		규 격	비	고
	이드슬립측정기													ton		
	제동시험기													ton		
	<u> </u>													ton		
<u> </u>	현 조 등 시 험 기				71									m		
<u> </u>		1		측 정	<u>검</u> 영 값	사	_	<u>결</u>	과				측 정	<u></u> 값		
기	검사항목 및					결과	기									결과
기	정 밀 도 기 준		검사	소선	측정값		기	정밀도기	ř			사 조		측정	紅	
			1					① 광도지시:				000				\dashv
			단					±15% 이내				000				\dashv
	① 좌・우 제동력지	좌	계					21070 -1 1	<u>.</u> II				cd			\dashv
	시		2								· ()		0mm			_
	단순형 및 판정형:		단								하		0mm			7
1.	±5% 이내		계				J 3.				좌		0mm			٦
	차륜구동형:		1				년 변	② (각 도 , 광	도)	각 도	우		0mm			
제	±2% 이내		护				환	변화시) 광축편			상		87mm			\perp
	(1단계 전륜,		ᅰ			_		±29/174			하	_	174mm			4
	2단계 후륜)	우	-				빔	(1/6도) 이내			좌		174mm			4
			2			_	전				우		174mm			
동			단 계				조			 공 도	3,000		29mm 29mm			-
l°			-11				등					Jocu				+-
	② 합계제 동력지시:						시	③ 판정 정밀.			광도		3,000cd			
	±5% 이내						험	광도:±1,000d	d	_	축	l	50mm			
1	③ 차이제동력지시:	좌					기	이내			티높이 .0m)	하	250mm			\dashv
시	±5% 이내	우						광축:					Loomin			+
	④ 중량설정지시:							±29/174	m m	_	}축 비높이	ᇵ	100mm			
	±5% 이내							(1/6도) 이내			.0m)	"	300mm			\dashv
				, ,	\ \ \ \ \ \ \ \ \ \ \ \ \ \ \ \ \ \ \		4	④기 타				자5	등상태의 정	사여브		
험		주		(;)			⑤ 판정및 의견		'-	- 64	76	0077 0	0*11		
	⑤ 제 동력 합계 판정:±2% 이내	주		())						A T C	= 11				$\overline{}$
	E8.12% VIII	차		()			4.	① "0" 지시:		IN측 작동시						_
	8 7 5 7 7 8	좌		()	\ \ \ \ \ \ \ \ \ \ \ \ \ \ \ \ \ \ \		사	±0.2mm/m		0	UT측 각	작동/	Ч			
기	⑥ 제 동력 차이 판정:±2% 이내	우	+	()) \			②5mm 지시:		IN	I측					
	① 롤러마모도: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전 우	/ <u> </u>		ㅣ이	±0.2mm/m			UT측					7
	기준직경의 2%미만		! 시 E좌	후우			트				-					
	8 기 타				상태의 정상여- ¹	부	슬	③판 정:		IN	l측 5m	m/m	1			
	⑨ 판정및 의견						_ 립	±0.2mm/m		0	UT축 5	5mm	/m			
-	U LOX 7L							④답판작동력		조	농시작	·점				
	① 속도지시:	4	0 Km	ı/h			측	시작: 4kg 이내								+
2.	±3% 이내	<u> </u>			1		정	5mm: 8kg 이	내		mm/m					\perp
1			0 Km				<u>ار ا</u>	⑤기 타		구조	・장치	작동	동상태의 정	상여부		
속	② 판 정:	32	2.0 Km	n/h	1	_	1''	⑥판정및 의견								

210mm×297mm (일반용지80g/m²)

① 결과표시: 정밀도검사기준에 적합시 ○, 부적합시 ×로 기록
② 판정 및 의견: 검사기준에 적합시는 "합격", 부적합시는 " 불합격"으로 표기하고, 불합격의 경우는 그 내용을 기록
③ 최초 및 구조변경밀도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계・기구의 구조・장치 검사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④ 단순형 측정기기(일반정비업체용 기계, 기구 포함) 의 판정장치 작동상태는 검사하지 않는다.

주

±1.0 Km/h 이내

기준직경의 2%미만

타

③ 롤러마모도:

⑤ 판정및 의견

④ 기

도

계

기

44.4 Km/h

전좌 전우

후좌 후우

구조ㆍ장치 작동상태의 정상여부

■ 특수검사업무세칙 [별지 제8호의3서식](제7조제1항 관련) <신설 2020.1.3., 개정 2024.06.25.>

□ 최 초 기계・기구 □ 정 기 정밀도검사표 □ 구 변

	네 체 명								대 표 자					
7	기 설치소재지									(전 화:)	
フ	l 기 명 칭	쳥	식		제 작	회 시	-	제	작 번 호		규 격	비	고	
사이	l 드슬립측정기										ton			
	구동형 제동시험기										ton			
속	도 계 시 험 기										ton			
전	조 등 시 험 기										m			
		_	검	사		결		과						
기	검사항목 및		정 값(kg)		결과	기	검사	항목 및		측	정 값		결과	
기	정 밀 도 기 준	롤 레 입 력 (psi)	검 사 조 건	측정값		기	정밀	도기 준		검 사 조	건	측정값	=-	
							① 광도	TI AI ·		10,000	cd			
		전 좌						시시. 6 이내		20,000			1	
	O 카르그도청·							• • 1 11		30,000				
										좌	174mm		1	
1.	①차륜구동형: ±2% 이내	전 우				3.					348mm		1	
차	고 2 % 이 데 각롤러						@ (ZF)	드라드시	각	우	174mm		-	
~	(전좌, 전우,	후 좌				주	② (각도,광도) 변화시) 광축편차: ±29/174mm	도		348mm		-		
	후좌, 후우)					행			상	174mm				
륜						빔		도) 이내	이내	하	174mm		1	
		후우				전					348mm			
구		' '				조		광도	10,000cc			1		
						등				30,000cd				
동		검사 조건 계	산 값			시		정밀도		광 -	12,000cd			
	보정계수	_, _,				험	_	1,000cd		도	15,000cd 1 0cm			
쳥	형 기계적 손실	전 좌								<u>상</u> 하	3 Ocm		+	
8		기계성 조심	전 우				_ 기	광축:		광	<u>ог</u>	1 5cm		+
		후 좌 후 우						174mm	축	좌	3 Ocm		1	
		7 T						도) 이내		우	3 Ocm		†	
제		전 좌					(A) 7	타	구조・장		·태의 정상여-	부		
							⑤ 판정	및 의견				-		
동									IN측 작동시					
		전 우				4.	① "0"		וויק יוסיי				+	
시	교정기 지시 값	정기 지시 값 후좌					±0.2m	1M/M	OUI국 작중시					
						사								
험						Ol	@5mm		1117				-	
		_				<u>=</u>	±0.2mi	m/m	OUT≇	<u>₹</u>				
		후 우							11.1.2	F /				
기						슬	③판	정:	IN≅	5mm/m			1	
	② 롤러마모도:	전좌 전우				립	±0.2mi	m/m	OUT≇	ት 5mm/m				
	기준직경의 2%미만 ③ 기타	후좌 후우					④ 답판적	나도려	TIE.	ITLTJ				
	③ 기타 ④ 판정및 의견					측	④ 답판≏ 시작: 4		작동시	시작점				
	① 관정및 의견 ① 속도지시:	4 0 Km/h				정	5mm:8		5mm	/m점				
	① 목도시시: ±3% 이내	6 0 Km/h				기	\$7	타			 ·태의 정상여-	=		
2.	2 판 정:	32.0 Km/h				-			1 - 12 - 12	94 4 5 G	<u> </u>	г	1	
속	±1.0 Km/h 이						⑥판정및	: 半선	<u> </u>					
	내	44.4 Km/h												
도	③ 롤러마모도:	전좌 전우					① 결괴	·표시: 정밀		준에 적합	합시 ○, 부격	덕합시 ×	로 기록	
계	기준직경의 2%미만	후좌 후우					② 판정	성 및 의견	: 검사	기준에 적	합시 ○, 부격 합시는 "합	격", 부적	합시는	
시	④ 기 타	구조 · 장치 작동·	상태의 정상여-	부		~	"불	합격"으로	표기하고	1, 불합격	의 경우는 :	그 내용을	: 기록	
						주					별지 제9호/ 결과를 작성			
험							④ 단속	1 ㅗ * 6 ▶형 츧젓기	이 급시 <mark>기</mark> (인바	쇼에 그 1 정비언체:	을파를 직정 용 기계, 기·	구 포화(리 의 파정	
기	⑤ 판정및 의견							- 8 ~ 8/ 작동상타				. — = /-		
							-							
												\ \ O O		

210mm×297mm (일 반용지 80g/m²)

[별지 제9호서식](제7조제1항 관련)<개정 2012.4.23., 2018.01.01>

기계ㆍ기구의 구조ㆍ장치 검사표

기기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결과
	가. 지 시 계	제동력 등 각 지시값은 과도한 변동이 없는 상태일 것	
		롤러는 기준직경의 2퍼센트 이상 과도하게 손상 또는 마모된 부분이 없을 것	
	나. 롤 러	롤러는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롤러의 직경, 안쪽, 바깥쪽 폭은 기준에 맞게 제작	
		설치되고 전・후 롤러 중심축의 간격은 계산식에 의해 계산될 것	
1.	다. 제동력전달장치	감속기와 전동기는 구동중 심한 이상음 또는 진동이 없을 것 파저철 및 친른구도철 레도시철기의 레도려 빠져 자신도 자도에 이사의 성은 것	
제	라. 판정장치	판정형 및 차륜구동형 제동시험기의 제동력 판정 장치는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동 시	마. 기록장치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기록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험	바. 중량설정장치	판정형 제동시험기의 중량설정장치는 작동 및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기	사. 기타장치 및	1) 리프트·롤러 고정장치 : 자동차의 진입·퇴출용 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표시	2) 자동차 바퀴 이탈방지장치 : 손상이 없고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	3) 제동시험기의 형식, 허용축중(중량), 제작번호, 제작일자 및 제작회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아. 설치상태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판정 및 의견		
	가. 지 시 계	속도지시 값은 과도한 변동이 없는 상태일 것	
		롤러는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롤러의 직경, 안쪽, 바깥쪽 폭은 기준에 맞게 제작 설치되고 전·후 롤러 중심축의 간격은 계산식에 의해 계산될 것	
	나. 롤 러	물러는 기준직경의 2퍼센트 이상 과도하게 손상 또는 마모된 부분이 없을 것	
		롤러는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직경, 안쪽, 바깥쪽 폭은 기준에 맞게 제작 설치되고	
2.		전ㆍ후 롤러 중심축의 간격은 계산식에 의해 계산될 것	
속	다. 판정 장치	자동형기기는 판정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도 계	라. 기록장치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기록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심험	마. 롤러 고정장치	자동차를 롤러에 안전하게 진입 및 퇴출시킬 수 있는 롤러고정장치의 작동상태에 이상이 없을 것	
기	바. 바퀴 이탈방지장치	바퀴 이탈방지장치는 손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상 없이 작동할 것	
	사. 리 프 트	자동차의 진・퇴출용 리프트는 작동이 이상이 없을 것	
	아. 형식등 표시	속도계시험기의 형식, 허용축중(중량), 제작번호, 제작일자 및 제작회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자. 설치상태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판정 및 의견		
	가. 지 시 계	광도 및 광축 지시 값은 과도한 변동이 없는 상태일 것	
3.	나. 정 대 장 치	차량을 정면으로 조준하기 위한 조준기 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전 조	다. 수광부 지지대 및 이동장치	지주와 레일은 견고하게 설치되고 상하좌우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등	라. 판정장치	자동형기기는 판정 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시	마. 기록장치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기록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험	바. 형식등 표시	전조등시험기의 형식, 제작번호, 제작일자 및 제작회사가 확실 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기	사. 설치상태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판정 및 의견		
	71 54 57	답판의 윗면은 자동차바퀴와의 사이에 적당한 마찰계수를 가져야 하며, 수평을	
4.	가. 답 판	유지하여야 하고, 답판의 이동에 소요되는 작동력은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것 답판의 크기 및 안쪽, 바깥쪽 폭은 기준에 맞게 제작 설치되어 있을 것	
아	나.지 시 계	지시값의 과도한 떨림이 없이 옆미끄럼량을 인(IN) 또는 아웃(OUT)으로 확실하게 나타내며	
드 슬	다. 판 정 장 치	최소 눈금 값은 0.1밀리미터 이내일 것(아날로그 방식 제외)	
립		자동형기기는 판정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측 정	라. 기 록 장 치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기록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기	마. 형식등 표시	사이드슬립측정기의 형식, 제작번호, 제작일자 및 제작회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	바. 설치상태 판정 및 의견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검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을 것	
기재		사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적합시 "○", 부적합시 "×"로 기록) JIP
방법	② 판성 및 의견 : 기기멸 -	P조·장치에 대한 검시결과가 적합시 "합격", 부적합시 "불합격"으로 기록하고 불합격의 경우는 그 내용을	: 기독

210mm×297mm (일반용지80g/m²) ■ 특수검사업무세칙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07.1.4., 2013.7.30., 개정 2018.01.01., 2024.06.25.>

택시미터주행검사기 및 가스누출감지기 정밀도 검사표(제7조제1항 관련)

1. 일반사항 검사일자: . .

업 체 명		대	표 자	
설치소재지			(전화 :	:)
기 기 명	형 식	제작회사	제작번호(제작일	비고
택시미터주행검사기				
가스누출감지기				

2. 택시미터주행검사기 구조기준 및 정밀도검사

항 목	내 용	결 과				
① 지 시 계	지시거리등 각 지시값은 과도한 변동이 없는 상태일 것					
② 회전수검출기	검출센서, 연결선, 연결단자의 단선 및 파손등 이상이 없을 것					
③ 보정장치	실제주행 거리와 주행검사기 주행거리의 오차를 보정하는 보정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④ 형식등 표시	택시미터주행검사기의 형식, 제작번호, 제작일자 및 제작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롤러 등 회전부는 지시계가 지시하는 최고속도에 상당하는 회전수로 작동하는 경우 라도 과도한 진동 및 이음이 없을 것					
⑤ 롤러	롤러는 기준직경의 2퍼센트 이상 과도하게 손상 또는 마모된 부분이 없을 것					
	롤러는 2개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직경, 안쪽, 바깥쪽 폭은 기준에 맞게 제작 설치되고 전・후 롤러 중심축의 간격은 계산식에 의해 계산될 것					
⑥ 판정장치	자동형기기는 판정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⑦ 기록장치	자동차검사에 사용되는 기기는 기록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을것					
	거리지시 : 기준기의 시험펄스 값에 해당하는 주행거리를 지시할 것					
⑧ 정밀도검사기준	보정치 : 롤러직경의 3% 이내					
	판정장치 : 수리검정 또는 사용검정의 각각 거리허용차 범위에 적합하게 판정할 것					
① 조 하파저 및 의	1경 건사자	(¢])				

9 종합판정 및 의견 (인) 검 사 자

3. 가스누출감지기 구조기준 및 정밀도검사

항 목	내용	결 과					
① 채 취 부	채취구, 호스, 필터는 균열 및 파손 등 이상이 없을 것						
② 지 시 계	가스의 누출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연속된 데이터를 지시(숫자, 지침, LED바 등) 하고 작동에 이상이 없을 것						
③ 경보장치	측정농도에 따른 경보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④ 형식등 표시	가스누출감지기의 형식, 제작번호, 측정가스 성분, 제작일자 및 제작사가 확실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⑤ 정밀도검사기준	폭발 하한값(LEL) 20% 이내에서 가스누출을 감지하여야 한다.						

⑥ 종합판정 및 의견 검 사 자 (인)

- 주) ① 결과의 표기 : 검사기준에 적합시 ○, 부적합시 ×로 기록
 - ② 종합판정 및 의견 : 적합시에는 "합격", 부적합시에는 "불합격"으로 표기하고 불합격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07.1.4.>

[별지 제12호서식](제7조제1항 관련) <개정 2018.9.10., 2020.12.11.>

기계ㆍ기구 정밀도검사 기록부

(앞 면)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등록번호	전화번호	

기계·기구의 표시

기 기 명	형 식	제작번호 (제작일)	검사번호 (검사일)	제 작 사	비고

주 요 기 록 사 항

년 월 일		내용	
발 행	기 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정	} (인)

210mm×297mm (일반용지120g/m²)

(뒷 면)

		검	사	내	역		
검 사 일	검사구분	기 기 명	7]	검 관	사 자 성 명	날 인	검사결과
					0 0		

※ 기재방법

- ① 검사구분: 최초정밀도검사는 최초, 구조변경정밀도검사는 구변, 정기정밀도검사는 정기로 기재
- ② 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 ③ 기기명: 사이드슬립측정기는 A, 제동시험기는 B, 속도계시험기는 S, 주행빔전조등시험기는 H, 변환빔전조등시험기는 L, 제동/속도계시험기는 BS, 택시미터주행시험기는 T, 가스누출감지기는 G로 기재하고, 각 기기의 검사종별·검사일이 같은 때에는 A,B,S,H,L,T,G로 기재
- ④ 검사결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기재

[별지 제13호서식](제7조제1항 관련) <개정 2008.2.13>

최초정밀도검사합격표발급대장

	검사내역			기계·기	구 의 니	내 역			
번호	검사일	검사 번호	설치업체	명칭	형 식	제작 번호	제작일	제작사	비고

297mm×210mm (일반용지70g/m²) [별지 제14호서식](제7조제2항 관련)<삭제 2020.6.8>

[별지 제15호서식](제7조제2항 관련) <삭제 2020.6.8>

[별지 제16호서식](제7조제2항 관련) <삭제 2020.6.8>

[별지 제16호의2서식](제7조제2항 관련) <삭제 2020.6.8>

[별지 제17호서식](제7조제2항 관련)<삭제 2020.6.8>

[별지 제18호서식](제7조제3항 관련)

검사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업체명	종류	선로명	검사일	검사유효기간	비고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70g/m²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08.2.13.> 삭제 <2018.9.10.>

[별지 제19호서식](제10조 관련) <삭제 2024.06.25.>

[별지 제20호서식](제10조 관련) <삭제 2020.6.8.>

[별지 제21호서식](제12조제2항 관련)

검사기기 이력대장

관리번호	기 기 명	형식
제 작 사	규 격	제작번호
제 작 일	설 치 일	구입가격
	변 경 사 항	

년 월 일	변	경	내	용	사유 및 근거

주 요 기 록 사 항

년 월 일	내	<u> </u>	비]	고

210mm×297mm (일반용지120g/m²)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09.2.10>